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MMDA형 정기예금』 특약(구 하나은행)
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

개정 전	개정 후	비	a
「MMDA형 정기예금」특약(구 하나은행)	「MMDA형 정기예금」특약	구행명	삭제
제 1 조 <mark>약관의 적용</mark> MMDA형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	제 1 조 <mark>적용범위</mark> "MMDA형 정기예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"의	조항명	변경
이 특약 외에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 , <u>거치식예금 약관(구 하나은행)</u> 을 적용합니다.	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mark>「예금거래 기본약관</mark> 」 및 <u>「거치식예금 약관</u> 」을 적용합니다.	구행명	삭제
제 2 조 예금과목 (생략)	제 2 조 예금과목 (좌동)		
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</u> 으로 합니다.	제 3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</u> 로 합니다.	가입디 추기	
제 4 조 ~ 제 8 조 (생략)	제 4 조 ~ 제 8 조 (좌동)		
제 9 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~ (중략) ~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</u> <u>하나은행)</u>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	제 9 조 기타 위 특약 사항은 ~ (중략) ~ 고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『 <mark>예금거래 기본약관』</mark> 제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립니다.	구행' 삭저	·